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대표발의)

법률 제 호

의 안 번 호	2248
------------	------

발의연월일 : 2016. 9. 9.  
발 의 자 : 윤관석 · 이찬열 · 위성곤  
윤후덕 · 서영교 · 안규백  
김병욱 · 정유섭 · 문진국  
인재근 · 김세연 · 신상진  
민홍철 · 박남춘 · 김정우  
의원(15인)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  
호) 중 “건설기계폐기업을”을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을”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건설기계폐기업”을 “건설기계해체재활용  
업”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를”을 “폐기 요청된  
건설기계의 인수(引受),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기 및”으로, “성  
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해체하거나 압축·파쇄·절단 또는 용해(鎔解)하  
는 것(이하 “폐기”라 한다)을”을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로 한다.

2. “폐기”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해체하거나 압축·파쇄·절단 또는 용해(鎔解)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  
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  
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  
5항(종전의 제4항) 중 “건설기계폐기업자에게”를 “건설기계해체재활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기계 소유자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폐기 요청을 받은  
건설기계 폐기업자는 인수한 건설기계를 폐기한 후 30일 이내에 건설  
기계 등록 말소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폐기 요청된 건설기계 중 상태가 양호하여 수출이 가능한  
건설기계가 상당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  
거가 부재하여 일괄 폐기되고 있어, 자원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폐기 요청된 건설기계 중 상태가 양호한 경우 수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자원을 재활용하고 수출산업을 증  
진하여 국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제6제1  
항·제2항·제4항·제5항, 제25조의2제1항·제4항, 제25조의2제2항 단서 신  
설, 제25조의2제3항 신설, 제25조의3제4항, 제44조제3항).

업자에게”로 한다.

9.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이하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에게 폐기를 요청한 경우

④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건설기계 소유자를 같음하여 시·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 소유자가 직접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의2제1항 중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폐기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건설기계폐기업자”라 한다)는”을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기계폐기업자는”을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건설기계폐기업자는”을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으로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인수한 건설기계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하거나 수출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폐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수출·판매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기계폐기업자는”을 “건설기

계해체재활용업자는”으로 한다.

제44조제3항제3호 중 “제6조제2항 또는 제3항에”를 “제6조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에”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 요청된 건설기계의 수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폐기 요청된 건설기계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기계폐기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계폐기업은 이 법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등) ① ----- ----- -.
1. (생략) <u>&lt;신설&gt;</u>	1. (현행과 같음) <u>2. “폐기”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해체하거나 압축·파쇄·절단 또는 용해(鎔解)하는 것을 말한다.</u>
2. “건설기계사업”이란 건설기계 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및 <u>건설기계폐기</u> 업을 말한다.	3. ----- ----- <u>건설기계 해체 재활용업</u> -----.
3. ~ 5. (생략)	4. ~ 6.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6. “건설기계폐기”란 <u>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해체하거나 압축·파쇄·절단 또는 용해(鎔解)하는 것</u> (이하 “폐기”라 한다)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7. -- <u>건설기계 해체 재활용업</u> -- ---폐기 요청된 건설기계의 인수(引受),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기 및 <u>말소등록</u> 신청의 대행을-----.

7. · 8. (생략)

## ② (생략)

제6조(등록의 말소) ① 시·도지사는 등록된 건설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신청이나 시·도지사의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1. ~ 8. (생략)

<신 설>

9. · 10. (생 략)

②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 1. 제1항제2호 및 제8호(제34조

8. · 9. (현행 제7호 및 제8호와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등록의 말소) ① -----

---

---

---

---

---

---

---

---

---

---

### 1. ~ 8. (현행과 같음)

9.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해체  
재활용업을 등록한 자(이하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에게 폐기를 요청한 경  
우

10. · 11. (현행 제9호 및 제10  
호와 같음)



